

의안번호	제562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4월 12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562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한국산업연수원 매입을 통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으로 상담·활동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이 가능한 도내 청소년에 대한 윈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규모는 부지 2,239㎡, 연면적 4,738.56㎡이고 사업비는 75억원임
* 도 경찰청 소유 건물(문화동 69-1) 무상 대부 중으로 '24. 10월 기간 만료 예정
- 제2수목원 조성 사유토지 매입은 미래기후변화에 대비해 충북의 산림 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집·증식·보전·연구하고, 점차 늘어가는 산림 문화·교육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비 약 6억원을 들여 수목원 확충을 위한 사유토지 14필지, 27,99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양여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입주 기업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설치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청주시 도로건설 승인을 받아 시도 9호선으로 지정)를 해당 도로 관리청인 청주시에 무상귀속하고자 하는 것임
* 「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됨
-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한국산업연수원 매입》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2번지
- 사업기간 : '24 ~ '25.
- 매입규모 : 부지 2,239㎡, 연면적 4,738.56㎡
- 사 업 비 : 75억원(도비, 토지 및 건물매입비) * 탁상감정가
- 내 용 :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제2수목원 조성 사유토지 매입》

일반회계

- 위 치 :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 472번지 등 14필지
- 사업기간 : '24 ~ '25.
- 매입규모 : 27,995㎡(14필지)
- 사 업 비 : 6억원(도비, 토지매입비)
- 내 용 : 충북 제2수목원 조성 부지 취득

□ 재산의 처분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양여》

특별회계

-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725번지
- 처분규모 및 시기 : 1필지 56,733.2㎡ / '24년 상반기
- 양 수 자 : 청주시
- 처분사유 : 해당 관리청에 무상귀속(「도로법」 제38조제1항)
- 처분방법 : 양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

3. 의안전문 : 붙임(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2 등 15필지	30,234	5,395,200				
	건물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2	4,738.56	2,700,000				
	기타							
1	토지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2	2,239	4,800,000	2024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 학교주식회사	
	건물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2	4,738.56	2,700,000	2024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 학교주식회사	
	기타							
2	토지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72	932	19,461	2024	충북 제2수목원 조성	조재구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73	1,342	23,400	"	"	한태곤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75	8,922	215,199	"	"	권오영 외 1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76	149	1,910	"	"	오창섭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77	119	2,164	"	"	홍원표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78	83	1,509	"	"	홍원표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79-2	1,628	39,268	"	"	홍원표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80-2	1,326	127,694	"	"	김영수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93	2,569	65,210	"	"	장성구 외 2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94	205	3,465	"	"	배기준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512	945	8,267	"	"	신은순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513	2,436	21,311	"	"	신은순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514	651	5,795	"	"	신은순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515	6,688	60,547	"	"	신은순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